

관한條例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1條중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條例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1條중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

第4條중 “議員이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를

“議員이 會期中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로 한다.

第5條第1項중 “國內旅行”을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國內旅行을”로 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1992年 3月6日부터 適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法施行令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이하 “議會”라 한다.)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 대하여 支給하는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게
第3條(出席日數 計算)(생략)	第3條(出席日數 計算)(現行과 같음)
第4條(旅費支給) 議員이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	第4條(旅費支給) 議員이 會期中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第5條(旅費의 種類) ①國內旅行을 할 경우에 支給하는 國內旅費는 運賃(鐵道運貨, 船舶運貨, 航空運貨, 自動車運貨), 現地交通費, 宿泊費, 食費, 食卓料로 구분한다. ②(생략)	第5條(旅費의 種類) ①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國內旅行을 할 경우에 支給하는 ②(現行과 같음)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改正理由

1991.12.31.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82條 및 第84條에 依據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를 改正하고자 함.

○主要骨子

- 事務機構를 事務局으로 한다.
- 幹事들 事務局長으로 한다.

○根據法令

地方自治法 第82條 및 第84條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제명중 “事務機構”를 “事務局”으로 한다.

第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事務局) ①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이하

“議會”라 한다.)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議會에 事務局을 둔다.

②事務局에 事務局長 1人과 기타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事務局長은 地方書記官으로 보한다.

④事務局長은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 議長 (이하 “議長”이라 한다.)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통괄하고 그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하부조직) ①事務局에 事務局長을 補

佐하기 위하여 專門委員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

②專門委員은 議案을 審查하고 議事進行을 補佐하며 5級상당의 別定職 또는 地方行政事務官으로 보한다.

第4條중 “事務機構”를 “事務局”으로 한다.

附 則

①(시행일)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사무기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	제명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
第1條(目的) (생략)	第1條(目的) (現行과 같음)
第2條(組織) ①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이하 “議會”라 한다.)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議會에 幹事 1人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第2條(事務局) ①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이하 “議會”라 한다.)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議會에 事務局을 둔다.
②幹事는 地方書記官으로 한다.	②事務局에 事務局長 1人과 기타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幹事는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 議長(이하 “議長”이라 한다.)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통괄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③事務局長은 地方書記官으로 보한다.
第3條(하부조직) 幹事의 業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專門委員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	第3條(하부조직) ①事務局에 事務局長을 補佐하기 위하여 專門委員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
第4條(職員의 定員) 區議會 事務機構에 두는 職級別 定員은 별표와 같다.	②專門委員은 議案을 審查하고, 議事進行을 補佐하며 5級상당의 別定職 또는 地方行政事務官으로 보한다.
第5條(職員의 派遣要請) (생략)	第4條(職員의 定員)事務局에
第6條(施行規則) (생략)	第5條(職員의 派遣要請) (現行과 같음)
	第6條(施行規則) (現行과 같음)